[]예정[]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4쪽 중 7 → 기선 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	비번호								7	H리기간	즉시			
신고기	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상호 법인명)	국제성	상사테스트		성명 표자명)	김=	국세	사업자등록	번호 01-01-01010			
사업자		싣	병년월일	Fri Mar		7:36:28 ((ST)	6MT+0900	전화번호 010-12		사업장 test	주소지 휴대전화 010-1234- 5678			
A)			업장 주소			종로구 종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test@test.com			
● 신 고 내 용														
			구분			(4)	1 :116	금액		세 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	세금계산서		(1) (2)		Out.amount utRe.amount ash.amount		10/100 10/100	billOut.vat billOutRe.vat cdCash.vat			
과세		신	- <u>에 마시크 8</u> 용카드 · 현금			(3)				10/100				
표준		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ash.amou		10/100	cdCash.vat			
및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cdC	ash.amou	nt	0/100	cdCash.vat			
매출	어제걸		기			(6)		ash.amou		0/100 pillOutDrop.ra	cdCash.vat			
세액			예정신고 누락			(7)								
			대손세액 가 합계	감		(8)		otVat.amo		outDeptVat.ra				
-				нғплот		(9) (10)		VatAmou		⑦ billInGet.rate	calVat.sum billInGet.vat			
	세금계	산서	일반매입 수출기업 수입분 L		HOM	(10-1)	IIIIII	nGet.amount		export_rate	export.vat			
	수취	분	<u> </u>	<u> </u>	<u>+πΜ</u>	(11)	hillin	GetFix.amount		billInGetFix.ra				
			예정신고 누탁	<u> 기년 기</u> 달 막분	3	(12)		Drop.amo		billInDrop.rat				
매입		매	<u></u>			(13)		nRe.amou		billInRe.rate				
세액			나의 공제매			(14)		etcDedDe.amount			e etcDedDe.vat			
	합계 (10)-(10-1)+(11)+(12)+(13)+(1					(15)		sum.amount		sum.rate	sum.vat			
	공제받지 못할 마					(16)		inNoded.amount		inNoded_rate				
			차감계 (15)-		(17)		/linus.amo	ount	(P)	plusMinus.vat				
2/2/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u>40) </u>)			paidVat			
경감			1 밖의 경감 공			(18)				etcDed.rate	e etcDed.vat			
공제		신용카	드매출전표등	발생공제	∥등	(19)	cdlr	come.am	ount	cdIncome.rat	cdIncome.vat			
세액			합계			(20)	ded	dSum.amo	ount	a	dedSum.vat			
		예정	신고 미환급 서	lI액		(21)	yetF	eturn.amount		0	yetReturn.vat			
		C	계정고지세액			(22)		sined.amc		H)	assined.vat			
	사업	양수자:	리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A) (b)	mnaPaidVat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	부세액		(24)					mnaSpaidVat			
가산세액계					/ - 170	(25)		<u>lded.amo</u>	unt	₩ (2-2)	added.vat			
-		자감 ·	<u> 가감하여 납투</u>	<u> </u>	<u>(환급받을 서</u>	액)(만-란·)-@-峥-孙-@+㈜) (환급받을 세액)			(26)	plusMinusVat			
_				팔 납부 /	사업사가 답	무알 세액(완급받을 세	<u> </u>			totalPayVat			
② (호	국세환급 사급세액(급금 계3 이 2천민	작신고 <u>난원 미만인 경</u>	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	계좌번호		account			
❸ 폐 업 신 고 폐업					폐업일	bi	zCloseDate	I	예업 사유					
④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 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업태 			종목	<u>1</u>	생산			게 걸었음을 확인합니다. 2 7		금액	registDate			
(27)			data27.com	BizEven	tdata27.pr	oduction	a t a			e.gistolset	(서명 또는 인)			
			data 28. com Biz Event data 28. pr								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			
(25) adda25.combizEventada25.phoddction adda25.umednt								(서명 또는 인)						
data30.combizevent data30.production data30.armount: 1 1														
	(31)합기	붸	sum.comB	izEvent	sum.pro	duction	sum.comBiz	を記め根格 を記する	e sum F.	AAAA				
세무대리인			성명	ā	agent	사업지	등록번호	coml	BizNo	전화번호	phone			

		<u> </u>	乙 <u>十</u>				
신고인 제출서류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	<u>-</u> /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란

-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5) · (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 (10) · (10-1) · (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과세표준 명세란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식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rm control transformation}$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22)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32)	billOut		10/100			billOut.vat		
	(7)매 출			타		(33)	billOutEtc.amount			10/100			billOutEtc.vat	
예정신고	()	영세율	세금기		1	(34)	billOutSm.amount				0/100		billOutSm.vat	
누락분 명세				타				nEtc.amount			0/100		billOutSmEtc.vat	
당세			합계					oSum.amountout[n.amount			•			
	(1.2\IIII.0.I		세금계산서 의 공제매입서	IOH							oillin.rate		billin.vat	
	(12)매입	그 ;;		141		(38)					etcDedDe.rate billInSum.rate		etcDedDe.vat billInSum.vat	
			합 계				billInSum.amount bil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신용카드매출전	40)	0) normalBuy.amount			normalBuy.			rate		normalBuy.vat			
	서 저	 출분	고정자산매 (4	41)	fi	xBuy.am	ount		fixBuy_rate		2	fixBuy.vat		
(14)		의제매입세액	ä	42)	طمطا	oputTay	amount		 뒤쪽참조			dedInputTax.vat		
그 밖의 공						putTax.amount edInputTax.amount		- 귀득점소 뒤쪽참조			recycleDedInputTax.vat			
제 매입세액		폐자원등 매입세 나업전환 매입세약										tebusinessChangeTax.vat		
명세		사 <u>라진된 배급제 :</u> 대고매입세액		45) 45)		ntoryTax.amount		inventoryTax					nventoryTax.vat	
- "		게고데곱세 <u>ㅋ</u> 변제대손세액		46)				repaymentTa					epaymentTax.vat	
		_ " "도 " ' 광객에 대한 환급		47)	foreignTax.amount			foreignTax.					foreignTax.vat	
			48)	sum,amount			sum,rate					sum.vat		
			/				1011							
_(16)		고에비의 모음	구분			(40)	-		세율			세액		
공제받지		공제받지 못할				(49) (50)			ut.amountcomlr d.amount dept		NoDed.rate		inNoDed.vat comInTaxCut.vat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				(50)							deptNoDed.vat	
명세		대손처분받 합 계				(51)								
						(32)	금액	ulli,alli	ım.amount <mark>inNo</mark> D			ate		
		구분						서				세액		
(18)	71711	전자신고 세액공			(53)		eleReport.amount			eleReport.rate			eleReport.vat	
(18) 그 밖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운송사업자 경			(54) (55)			mounteleTaxState						
경감·공제	· 현금		(56)		axi.amount						taxi.vat cashReceipt.vat			
세액 명세	언드		(57)		cashReceipt.amount etc.amount			cashReceipt.rate etc.rate			etc.vat			
		기 타 합 계			(58)	sum.amount			sum.rate			sum.vat		
			(50)											
•		구분	(59)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미등록 등	업사미등목 등 지연발급 등									taxDelayIssue.vat		
	세금계산서		시인필급 등 지연수취			axDelayTake.amount			5/1,000			taxDelayTake.vat		
	AIIDAIICAI		 기한국위 미발급 등		2)					100			Nolssue.vat	
	전자세금계산/		지연전송				aySend.am				eTaxDelaySend.vat			
	발급명세 전송		- <u> 0</u> 전송		64) eleTaxNoSend.am						eleTaxNoSend.vat			
•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SumBac						nBadSubmit.vat		
	"급 "근 ' 합계표		지연제출			(65) taxSumBadSubmit (66) taxSumDelaySubm								
(25)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oReportNormal.amour				· 즉참조	noReportUnfair.vat		ortNormal.vat	
가산세 명 세	시그 브서시	무신그				oReport	ount			portUnfair.vat				
- 11	신고 불성실	과소 · 초과환급신고(일반)			9) ov	erReportNormal.amoun			뒤즥	즉참조	overReportNormal.vat			
			한급신고(부당		70) overReportUnfaire.						ove		portUnfaire.vat	
		납부 불성실		(7			ay.amount							
		: 과세표준신고 [금매출명세서 불성	(7		kReport.an									
		(7		mount	1/	badCashSalesReport.amount								
	부동산임		(74) badRealEstate.am (75) MnaSpaidNoAccount.			count.amount 뒤쪽침			MnaSpaidI		alEstate.amount			
	매입자 납부특히													
		기네게되 합 계	· 지연입금	_	(76) MnaSpaidDelay.amo(77) sum.amount			ount 뒤쪽참조 sum.rate			MnaSpaidDelay.amount sum.vat			
				(/										
		업태)	종목):		코드번호 a t a 7 8 .			금액			
면세사업	(70) data 70	3.comBizStatus 9.comBizStatus				BizEvent				9 .			ect Object]	
수입금액	(79) data79 (80) 수9	data79.comB data80.comB					a ta		[object Object] [object Object]					
	data81.c	data80.comB									data81.amount			
								,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					billssueAmount									
및 수취 명세 (83) 계산서 수취금액 billTakeAmount														

작성 방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 · (38):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40) · (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4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명세란

-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 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67) · (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69) · (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3×(경과일수)/10,000 입니다.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3×(경과일수)/10,000 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 (78) · (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